

의안
번호

273

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4. 04. 17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나. 의안번호 : 제273호

다. 제출일자 : 2024. 4. 5.

라. 회부일자 : 2024. 4. 11.

2. 제안이유

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, 현실적인 상담
이용료 기준을 반영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명칭 변경(안 제9조)

1) 법 제10조의 제목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변경함.

나. 상담수수료에 관한 기준 정비(별표1)

1) 별표 1의 제목 중 “(제8조제3항 관련)” 을 “(제7조제3항 관련)” 으로 수정

2) 같은 표 서식 중 평균과 외부 민간기관 부분을 삭제

3) 같은 표 심리검사 항목 중 종합심리검사(풀배터리) 조정금액을 기존 130,000원에서 150,000원으로 금액 변경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0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4. 02. 29. ~ 2024. 03. 20.

○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개정안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담수수료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안 제9조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“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”를 “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”로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0조¹⁾의 제목 개정 (2021. 3. 23. 개정되어 9. 24.부터 시행)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으며,
- 안 별표1 개정은 제목 중 "제8조제3항 관련"을 "제7조제3항 관련"으로 기존 오류 사항을 수정하고, 심리검사 항목 중 종합심리검사(폴배터리) 조정금액을 기존 130,000원에서 150,000원으로 현실화하는 등 상담수수료에 관한 기준을 정비한 것임.

1) 「**청소년복지 지원법**」제10조(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1. 3. 23.>
②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·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1. 3. 23.>
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신설 2021. 3. 23.>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,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21. 3. 23.>

[제목개정 2021. 3. 23.]

□ 종합의견

-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개정안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담수수료에 관한 기준금액을 정비하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.